

[V]신규발급, []재발급

(앞쪽)

실습생 인적사항	성명	김실습	생년월일	990909	
	휴대전화번호	012-3456-7890	학교명	00대학교 또는 00평생교육원	
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	실습기관명	00복지관		실습기관 관리번호	2020-000-0000
	기관주소	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60, 메가벤처타워 404호		전화번호	02-786-0845
	실습지도자명	이지도	사회복지사자격번호 (취득일자)	제2-0000001호 (2020. 01. 01.)	
실습기간	실습기간	2020년 4월 1일 ~ 2020년 4월 30일			
	실습시간	총 160시간 (총 20회, 1일 평균 8시간)			

실습기관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조 [별표1]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에 의해 기관 실습을 진행하였으며, 상기 실습생이 위와 같이 기관실습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20년 5월 1일

기관실습 지도자 : 이지도 (서명 또는 인)

기관실습 실시기관 : 00복지관



교육기관 및 세미나교수	교육기관 유형	[V]오프라인 / []온라인	교육기관명	00대학교 또는 00평생교육원	
	실습세미나 교수명	박교수		학과명	사회복지학과
	실습세미나 교수 취득학위 (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)	[V]학사, [V]석사, []박사	교육기관 전화번호	02-084-5786	
실습세미나	실습세미나 기간	2020년 3월 2일 ~ 2020년 6월 30일			
	실습세미나 횟수(시간)	총 15회 (30시간)	대면방식 세미나 횟수(시간)	총 15회 (30시간)	

교육기관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조 [별표1]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세미나 지도교수에 의해 실습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, 상기 실습생은 위와 같이 실습세미나를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20년 7월 1일

실습세미나 교수 : 박교수 (서명 또는 인)

학과장 : 정학과장



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

재발급 사유	※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재발급 시 재발급 사유 기재 바랍니다.
<p>[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] 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[별표1]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(제3조 관련)</p> <p>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: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, 법인, 시설 또는 단체</p> <p>② 기관실습 지도자 :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</p> <p>③ 기관실습 시간 :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.(단, 2020.1.1. 기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)</p> <p>④ 실습세미나 :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하며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,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</p> <p>⑤ 실습세미나 교수 : 학사,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</p> <p>※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, 미충족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.</p>	